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운영  
규정 입안서**



**2025년 6월 5일**

**한국관광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운영 규정 (개정안)

## 1. 규정 제·개정 및 폐지 목록표

구분	분류	규정명	제·개정 사유
개정	3장. 사무행정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운영 규정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3주기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 영역 변경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해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예산중복방지위원회, 사업비관리위원회를 추가함.

## 2.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주요 내용

-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3주기(2025~2027) 기본계획에 의거 규정의 제5조(사업) 내용 변경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 관리 강화를 위해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예산중복방지위원회, 사업비관리위원회를 추가함. 이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중복을 방지하며, 사업비 사용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음.

## 3.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제5조(사업)</b>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 혁신을 위한 체제 개편 및 구조혁신 지원</li> <li>2. 대학의 교육 혁신 전략 지원</li> <li>3. 대학의 산학협력 혁신 전략 지원</li> <li>4. 대학의 기타 혁신 전략 지원</li> <li>5. 기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 등</li> </ol>	<p><b>제5조(사업)</b>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의 교육 혁신 전략 지원</li> <li>2. 대학의 고등직업 교육 혁신 전략 지원</li> <li>3. 대학의 산학·지역 협력 지원</li> <li>4. 대학의 자율혁신 전략 지원</li> <li>5. 기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 등</li> </ol> <p>&lt;개정 2025.07.01.&gt;</p>
<p><b>제8조(사업추진위원회)</b> ①사업단은 사업계획 수립, 관리, 운영, 자체평가 등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내·외 전문가를 포함한 사업추진위원회를 두며 교내위원은 교무위원급으로 구성한다.</p> <p>②사업추진위원회는 10인 내외로 구성하고,</p>	<p><b>제8조(대학혁신운영위원회)</b> ①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p> <p>② 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p> <p>③그 외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③그 외 사업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lt;개정 2025.07.01.&gt;</p>
	<p><b>제10조(예산중복방지위원회)</b> ①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간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중복방지위원회(이하 “중복방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중복방지위원회는 교무위원, 교수, 직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p> <p>③ 중복방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팀장이 되고,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정한다.</p> <p>④ 중복방지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정지원사업간의 중복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li> <li>2. 중복집행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li> <li>3. 재정지원사업의 중복 예산계획 방지에 관한 사항</li> <li>4. 재정지원사업의 중복 지출 방지에 관한 사항</li> <li>5. 기타 재정지원사업간 중복집행방지와 관련된 제반사항</li> </ol> <p>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본조신설 2025.07.01.]</p>
	<p><b>제11조(사업비관리위원회)</b> ① 사업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점검을 위해 사업비관리위원회를 둔다.</p> <p>② 사업비관리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비 집행실적 점검 및 분석에 관한 사항</li> </ol>

현 행	개 정 안
	<p>2. 그 밖에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개선 및 보완을 위해 필요한 사항</p> <p>③ 사업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교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 교체할 수 있다.</p> <p>⑤ 그 밖에 사업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다.</p> <p>[본조신설 2025.07.01.]</p>
제10조(사업단의 회계)	제12조(사업단의 회계)
제11조(사업비의 집행)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제12조(자체운영 지침)	제14조(자체운영 지침)
제13조(유효기간)	제15조(유효기간)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p>

#### 4. 규정 개정(안) 전문 첨부

	<b>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운영 규정</b>	규정번호		KTC-03-16	
		제정일자		2019. 05. 01	
		개정일자		2025. 07. 01	
		개정번호	Ver2.01	총페이지	3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등직업교육 체제를 혁신하고, 대학별 전략산업(국가, 지역 산업 등) 및 사회수요 맞춤형 전문기술인재 양성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이하 ” 사업” 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전문대학 중 제3조의 각호에 따른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단“(이하” 사업단 “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수행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국고지원금“이라 함은 교육부가 지원하는 출연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본 대학교의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기적이고 통합적으로 기획·조정함으로써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증진시킨다.

**제4조(규정의 적용범위)** 본 대학교의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한다.

**제5조(사업)**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학의 교육 혁신 전략 지원
2. 대학의 고등직업 교육 혁신 전략 지원
3. 대학의 산학·지역 협력 지원
4. 대학의 자율혁신 전략 지원
5. 기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 등

### 제 2 장 조 직

**제6조(사업단의 구성)** ①사업단은 총장직속으로 설치 운영하며, 사업단장이 사업을 총괄하고 사업 추진

을 위한 하부조직을 구성 운영한다.

②사업단장의 임기는 총 사업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사업단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전임교원으로 교무위원급으로 보하며,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 내 각 조직과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한 하도록 사업을 총괄한다.

④사업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하부조직)** 사업 추진을 위한 하부 조직을 구성하고 담당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자체평가위원회 : 사업성과 모니터링, 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평가, 목표달성 점검 등

②기획팀 : 사업계획 수립, 사업 지표 설정 및 관리체계 마련 등

③운영팀 : 세부사업별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성과지표 운영 등

**제8조(대학혁신운영위원회)** ①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해 대학혁신운영위원회를 둔다.

②대학혁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③그 외 대학혁신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7.01.>

**제9조(자체평가위원회)** ①사업단은 사업 진행 상황, 집행과정의 적정성 등 사업목표 달성 등 자체평가를 위해 교내·전문가를 포함한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자체평가위원회는 8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③ 그 외 자체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예산중복방지위원회)** ①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간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중복방지위원회를 둔다.

② 중복방지위원회는 위원장은 포함한 6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팀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③그 외 예산중복방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07.01.]

**제11조(사업비관리위원회)** ① 사업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점검을 위해 사업비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사업비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교내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③그 외 사업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07.01.]

## 제 3 장 재산 및 회계

- 제12조(사업단의 회계)** ① 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에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로 하되,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 ④ 회계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사업비 회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사업비의 집행)** ① 모든 사업비는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
- ② 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사업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그 밖에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자체운영 지침)** ① 전문대학 육성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자체운영지침”(이하 “자체운영지침”이라 한다)를 따로 제정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 ② 국고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도모한다.
- ③ 그 밖에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유효기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